

## 2015년 4월부터

### ● 저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이 확충되었습니다(일부 실시)

저소득자의 보험료에 경감 조치가 마련되어 표준 부담 비율로 최대한 경감할 경우, 제1단계에 해당하는 분의 부담 비율이 기준액의 0.45로 경감됩니다. 또, 소득 수준에 따른 보험료의 표준 단계가 6단계에서 9단계로 바뀌었습니다.

### ● 개호노인복지시설의 입소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개호노인복지시설(특별양호노인홈)의 신규 입소는 원칙적으로 요개호 3 이상인 분이 대상이 됩니다.

## 2015년 8월부터

### ● 일정 이상의 소득이 있는 분은 이용자 부담이 바뀝니다

일정 이상의 소득이 있는 분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의 이용자 부담이 20%가 됩니다.

### ● 개호보험부담비율증이 발행됩니다

구시정촌으로부터 이용자의 부담 비율(10% 또는 20%)이 기재된 개호보험부담비율증이 발행됩니다.

### ● 저소득 이용자가 부담하는 식비·거주비의 경감 적용 조건이 바뀝니다

저소득 이용자 중 배우자가 주민세 과세자인 경우 또는 예저금 등이 일정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식비·거주비의 경감이 없어집니다.

### ● 고액개호서비스비 등의 상한액이 일부 바뀝니다

의료보험의 현역 수준 소득 상당에 해당하는 분은 세대 부담의 상한액이 올라갑니다.

## 2016년 4월부터

### ● 소규모 통소개호가 지역밀착형 서비스로 이행됩니다(2016년 4월에 개시)

정원이 18명 이하인 소규모 통소개호가 「지역밀착형 통소개호」로서 지역밀착형 서비스로 이행됩니다.

## 2017년 4월부터

### ● 저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의 확충이 완전 실시됩니다

표준 부담 비율로 최대한 경감할 경우, 제1단계에 해당하는 분은 기준액의 30%, 제2단계에 해당하는 분은 50%, 제3단계에 해당하는 분은 70%의 부담으로 경감됩니다.

## 구시정촌에 따라 개시 시기가 다릅니다

### ● 요지원 1·2에 해당하는 분이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일부 변경됩니다

요지원 1·2에 해당하는 분 전용의 「개호예방방문개호」와 「개호예방통소개호」가 개호예방·일상생활지원종합사업으로 이행되어, 지역 실정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구시정촌별로 개시 시기가 다릅니다)



개호보험제도의 개요	.....	3
서비스 이용의 절차	.....	5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	7
· 케어플랜의 작성	.....	7
· 가정에서 받는 서비스	.....	7
· 시설 등에 가서 받는 서비스	.....	9
· 시설 등에서 생활하면서 받는 서비스	.....	11
· 그 외의 서비스	.....	13
개호서비스의 이용자 부담	.....	15
이용자 부담액의 경감제도	.....	15
지역지원사업	.....	17
· 지역지원사업	.....	
· 지역포괄지원센터	.....	
· 개호예방·일상생활지원종합사업	.....	
보 험 료	.....	19
개호서비스의 선택방법	.....	22
· 개호서비스 정보의 공표 제도	.....	
· 복지서비스 제삼자 평가 제도	.....	
상담창구	.....	23